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5호 2022. 9. 21.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033호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2-1046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4
- 정선군 공고 제2022-1059호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27
- 정선군 공고 제2022-1079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설치 행정예고.....34
- 정선군 공고 제2022-1304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033호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사업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닐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이 원칙
- 주된 사업 실비위주로 지원(기념품 및 비품구입비, 식비, 음료수, 간식비 등은 자부담 원칙)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주된 사업) 이외의 사업 지원 불가 (예 : 00환경보호단체에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 경우 등)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8.(목) ~ 2022. 9. 23.(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22. 9. 2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정선군 지방보조금 사업분야별 소관부서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첨부 서식 작성 제출

5.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사업선정 ⇨ 예산편성 ⇨ 의회의결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선정단체 개별통지

7. 보조금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보조금정산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실적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반영

8. 기타사항(벌칙)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 * 사업의 내용 무단 변경 등
-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마. 기타사항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정선군 공고 제2022-1046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및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조 ~ 제5조)
-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8조 ~ 제24조)
- 라. 부칙 (부칙 안 제2조 ~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ays25@korea.kr
- 2) 우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3) 팩스 : 033-560-2587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1부.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정선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정선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정선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정선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정선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정선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정선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관·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 업무 팀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89호 신규제정 2021. 10.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2021.10.19 제18489호]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관보 또는 공보
 -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다. 정보시스템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제한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제한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제한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고용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2.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3.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1개월	2개월	4개월
4.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5.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호별 방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6.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7.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 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 부 금 액	금 원(₩)	
기 부 대 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 레 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160g/m²)

○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례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059호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정 선 군 수

1. 평가위원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2022. 9. 14.(수) ~ 9. 23.(금)

나. 모집인원: 예비평가위원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다. 모집분야: 경관·조경, 도시·관광, 행정·정책, 보건·치유분야 전문가, 교수, 타지자체 공무원

라. 역할: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마. 자격요건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공무원
- 2)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3)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5)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제외대상

- 1)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회피사유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

2.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9. 14.(수) ~ 9. 23.(금)

나. 접수장소: 정선군청 산림과(산림정책팀)

다. 접수방법: 공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산림과

2) 팩 스: 033-560-2019

3) 전자메일: khindu@korea.kr

라.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자격증명서류 각 1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

2) 팩스, 전자메일 신청시 반드시 전화(033 - 560 - 2252)로 접수 확인하여야 함.

3.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2022. 9. 26.(월) 14:00 ~

나. 선정인원: 7명 (예비위원 2명 별도 선정)

다. 선정방법: 업체의 제안서 제출 시 추천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

1) 추천 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2)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업체당 1명 추가 추천하여 예비위원 2명 별도 선정

라.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

※ 연락 불능 및 불참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마. 위원장은 평가일 위원중에서 호선

4. 제안서 평가일정

가. 일 시: 2022. 9. 28.(수) 14:00

나. 장 소: 정선군청 대회의실(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해촉 절차 없이 위·해촉된 것으로 봄.

나. 상기 일정은 정선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접수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되며 일절 반환하지 않고,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평가수당 지급함.
-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로 관리될 예정이며, 등록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을 엄수하기 바람
-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산림과 산림정책팀(☎ 033 - 560 - 2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평가위원 활동경력 등)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당지급용)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인적 사항 ~ 3. 직장 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 직급 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렬까지 기재
 -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 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 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정선군이 추진하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공정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 포함)정보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2-1079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설치 행정예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를 설치·운영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명: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설치공사

나. 사업규모: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2개소

다. 설치목적: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별표1] 위치도 참조

연번	장소	상세주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1	덕송삼거리	정선읍 덕송리 497-1	2	속도위반 단속	
2	낙천리 일원	임계면 낙천리 136-15	2	속도위반 단속	

마. 주관부서: 정선군청 안전과(교통지도팀) (033-560-2512)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9월 16일 ~ 2022년 10월 6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0월 6일까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제출서식: “붙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정선군청 안전과(교통지도팀) ☎ 033-560-2512

마. 제출기관: 정선군청 안전과(교통지도팀)

- 주 소: (26131)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 전 화: 033-560-2512

- FAX: 033-560-2174

- E-mail: plus93@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예정장소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설치예정장소 위치도

1. 덕송삼거리

위성도 덕송삼거리 (설치 예정지-덕송리 497-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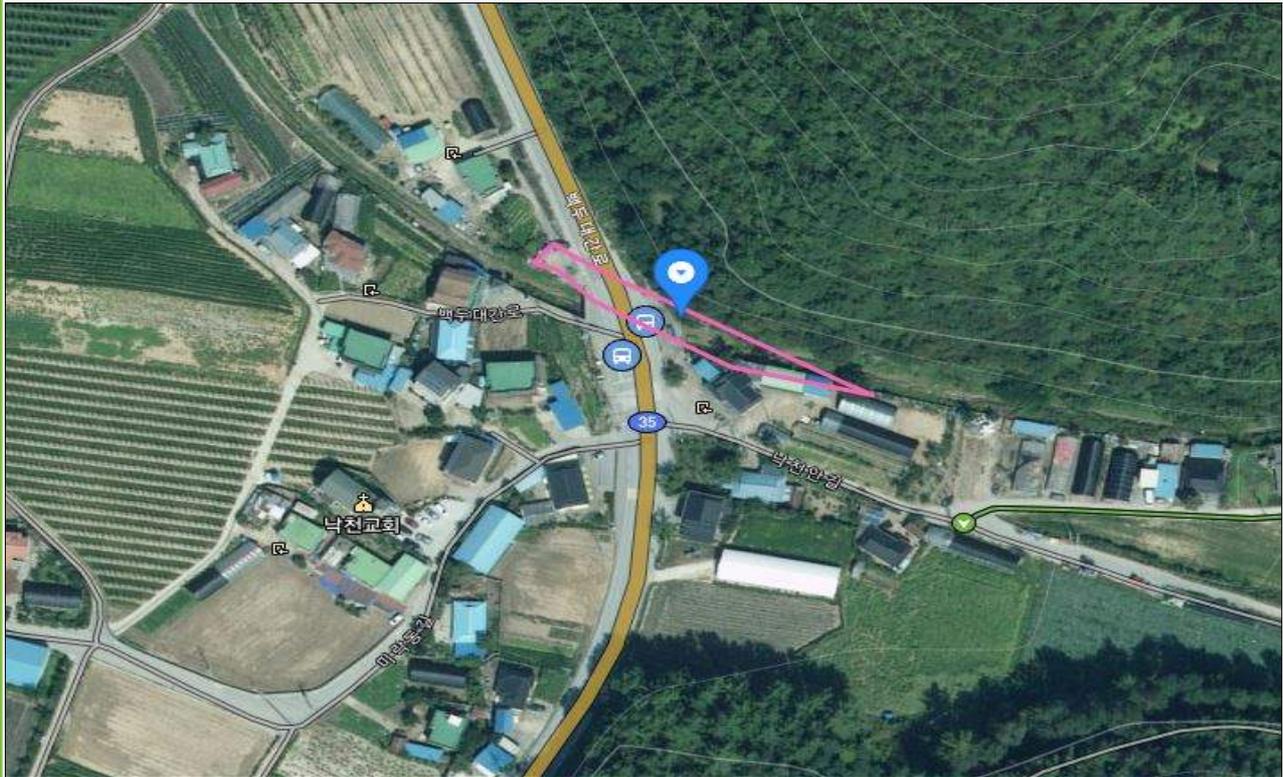


위치도 덕송삼거리 (설치 예정지-덕송삼거리)



2. 낙천리 일원

위성도 낙천리 일원 (설치 예정지-낙천리 136-15번지)



위치도 낙천리 일원 (설치 예정지-낙천1,2,3리 중심교차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선군 공고 제2022-1304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군수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노상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장애인등록 및 취소 등 사무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4.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3조, 제4조
5.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민원처리	지방세 기본법 제6조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
6. 불용품 매각처리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7.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8. 대마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82조제3항
10.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12.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관리	먹는물 관리법 제8조
13.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14.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15.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노상 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도로법 제75조
16. 장애인등록 및 취소 등 사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08호, 2022. 6. 21., 타법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